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 방 연 구 직 및 지 도 직 공 무 원 의

임 용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
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24. 12. 31.)됨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직급표를 이에 맞추어 개편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
도직공무원의 일부 직류를 변경하는 한편,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개편(안 별표 1)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하여 ‘기술직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농촌지도 직렬 내 일부 직류 명칭 변경(안 별표 1)

농촌지도 직렬 내 ‘농업’, ‘잠업’, ‘농업기계’ 직류 명칭을 각각 ‘작물’,
‘산업곤충’, ‘농업공학’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변화 추세를 반영하고자
함

다.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 명확화(안 제20조)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라. 농촌지도 직렬 내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 준용 규정 정비(안 제22조)

국가 지도직에서 폐지한 ‘임업’, ‘농업토목’, ‘가축위생’ 직류에 대해 지방 지도직은 존치 필요성이 있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2023년 12월 6일 대통령령 제34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시험과목을 각각 준용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3. 19. ~ 4.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회규칙”을 “의회인사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6호 중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승진임용하거나”를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승진임용할”을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할”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직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과목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녹지연구직렬의 임업직류 및 조경직류는 임업연구직렬의 임업직류 및 산림조경직류의 시험과목을 각각 준용
2. 농촌지도직렬의 임업직류, 가축위생직류, 농업토목직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2023년 12월 6일 대통령령 제34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시험과목을 각

각 준용

별표 1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 중 “기술”을 각각 “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란의 농업란 중 “농업”을 “작물”로 하며, 같은 란의 잠업란 중 “잠업”을 “산업곤충”으로 하고, 같은 란의 농업기계란 중 “농업기계”를 “농업공학”으로 한다.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직급표

직군	직렬	직류	직급	
			연구관	연구사
학예	학예연구	학예일반	지방학예연구관	지방학예연구사
		미술		
		국악		
		국어		
	편사연구	편사	지방편사연구관	지방편사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지방기록연구관	지방기록연구사
과학기술	공업연구	기계	지방공업연구관	지방공업연구사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공		
		화학		
		산업경영		
		물리		
	농업연구	작물	지방농업연구관	지방농업연구사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업경영		
		산업곤충		
		원예		
		생명유전		
		농촌생활		
		축산		

		농공		
		농식품개발		
	녹지연구	임업	지방녹지연구관	지방녹지연구사
		조경		
	수의연구	수의	지방수의연구관	지방수의연구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지방해양수산연구관	지방해양수산연구사
		수산자원		
		수산양식		
		수산공학		
		수산가공		
		수산경제		
	보건연구	의학	지방보건연구관	지방보건연구사
		약학		
		공중보건		
	환경연구	환경	지방환경연구관	지방환경연구사
	시설연구	토목	지방시설연구관	지방시설연구사
		건축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지방방재안전연구관	지방방재안전연구사
		재난관리		

2.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직군	직렬	직류	직급	
			지도관	지도사
과학기술	농촌지도	작물	지방농촌지도관	지방농촌지도사
		농업경영		
		임업		
		산업곤충		
		원예		
		축산		
		가축위생		
		농촌사회		
		농업공학		
		농업토목		
		농촌생활		
	어촌지도	어촌	지방어촌지도관	지방어촌지도사

별표 4 제1호나목 경력란 2)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경력란 5)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경력 환산율표(제19조제2항 관련)

1. 공무원경력

경력	환산율
가. 갑경력 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3)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 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지·통합되는 직렬에서 같은 계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 4)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받은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기간	100%
나. 을경력 1) 가목3)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직무 내용이 유사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과학기술직군 공무원의 경력 3)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 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 직군에서 같은 계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 4)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80%
다. 병경력 1)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제2호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 3)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60%

다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4) 같은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 상당의 경력 5) 직무 내용이 유사한 바로 아래 계급 상당의 과학기술직 군 공무원의 경력 6) 해당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재 직한 경력(별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연구직 및 지 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만 해당한다) 7) 해당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재 직한 경력[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임기제공 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임 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 수로 인정하는 기간만 해당한다] 8) 해당 계급에 상당하는 직위군 이상의 전문경력관으로 재 직한 경력(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연구직 및 지도 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만 해당한다)	
라. 정경력 다른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 상당의 경력	30%

2. 그 밖의 경력

경력	환산율
가. 박사학위 소지경력 임용권자가 정하는 해당 계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 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 학 및 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 력 및 교육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 연구직원이 10명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
나. 자격증 소지경력	1) 같은 직류 상위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계급의 경력경쟁 임용에 필요한 경 력을 초과하여 종 사한 경력: 100% 2) 같은 직류 같은 계급의 경력경쟁 임용에 필요한 경 력을 초과하여 종 사한 경력: 80%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근무경력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	60%

비고

1. 이 별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이 별표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직무 내용이 유사한 과학기술직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3. 이 별표 제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만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4. 이 별표 제2호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 기관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또는 기술직군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촌지도 직렬의 농업직류, 잠업 직류 및 농업기계 직류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농업 직류, 잠업 직류 및 농업기계 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작물 직류, 산업곤충 직류 및 농업공학 직류의 해당 직급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농업 직류, 잠업 직류 및 농업기계 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작물 직류, 산업곤충 직류 및 농업공학 직류의 지도직 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농업 직류, 잠업 직류 및 농업기계 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 직렬의 작물 직류, 산업곤충 직류 및 농업공학 직류의 지도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용후보자의 전직) ① 임 용령 제15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에 임용 또는 추천될 수 있는 임용후보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 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 의회 의장(시·도의회의 의장과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용 또는 추천하려는 직렬로의 전직 예정 직급별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및 <u>의회규칙</u> 을 포함한다. 이하 “규칙”이라 한 다)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 추어야 한다.	제5조(임용후보자의 전직) ① --- ----- ----- ----- ----- ----- ----- ----- ----- ----- ----- ----- ----- <u>의회인사규칙</u>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 할 수 있다.	제10조(전직시험의 면제) ----- ----- ----- ----- -----.
1. ~ 5.(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별표 2 제1호가목·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가목·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을 같은 직군에서 각각 다른 연구직렬이나 다른 기술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제20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생략)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

6. -----

-- 과학기술직렬-----

제20조(특별승진임용)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후
단 삭제>

3. (현행과 같음)
4. -----

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임용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생략)

제22조(시험과목 등)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 시험과목은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적용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를 준용

----- <후단 삭제>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인사위원회
의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
거나 -----

-----.

④ -----

----- 결원이 없는 경
우에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승진임용할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시험과목 등) ① -----

----- 준용

한다. 다만, 녹지연구직렬의 임
업직류 및 조경직류는 임업연구
직렬의 임업직류 및 산림조경직
류의 시험과목을 각각 준용한
다.

<신 설>

<신 설>

② ~ ⑪ (생략)

하되, 직류 명칭이 상이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과
목을 준용한다. <단서 삭제>

1. 녹지연구직렬의 임업직류 및
조경직류는 임업연구직렬의
임업직류 및 산림조경직류의
시험과목을 각각 준용

2. 농촌지도직렬의 임업직류, 가축위생직류, 농업토목직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2023년 12월 6일 대통령령 제34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의 시험과목을 각
각 준용

② ~ ⑪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44